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2.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가. 구체적인 연체요율 등에 대해서는 시중 은행의 연체이자율의 변동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안 제32조제5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2조제5항 전단 중 “체납된 사용료에 체납일수 1일당 10만분의 22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금을 징수”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일단위로 징수”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 ④ (생략)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신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사용료에 체납일수 1일당 10만분의 22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의 한도는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	⑤ -----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일단위로 징수-----.

<u><신 설></u>	<u>으로 정한다.</u> ⑥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 니하면 기간을 정 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사 용료 및 제5항에 따른 연체금을 내 지 아니하면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국세 강제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 -----. ⑥ (개정안과 같음)
---------------------------	---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97
----------	------

발의연월일 : 2024. 9. 23.

발 의 자 : 손명수 · 김남근 · 김선민
김태년 · 김한규 · 남인순
박 정 · 송기현 · 이훈기
정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시설 등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사용자와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료 체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처분인 가산금과 연체금의 경우 침익적 행위로서 그 근거는 법률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이를 징수하고 있어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체금 부과근거 및 기준을 신설하여 연체금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되, 그 기준을 1일을 단위로 가산하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하고 부과 상한은 최대 50%를 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연체금 부과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신설 등).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가. 구체적인 연체요율 등에 대해서는 시중 은행의 연체이자율의

변동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안 제32조제 5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일단위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의 한도는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사용료 및 제5항에 따른 연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체납된 사용료 및 연체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 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 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 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 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연체금을 일단위로 징수한 다. 이 경우 연체금의 한도는 채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⑥ <u>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 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 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 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 정된 기간에 사용료 및 제5항 에 따른 연체금을 내지 아니하</u>
<u><신 설></u>	

	<u>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u> <u>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u> <u>라 징수할 수 있다.</u>
--	--